



### 신도증 수계증 남발하지 말자

1994년 개혁이후 조계종은 그 조직과 사업에서 놀랄만한 변화를 했다. 그중 하나가 신도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포교원의 설립이다.

포교원에서는 출범초기부터 중요 사업과제의 하나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태의 신도증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

포교원은 조계종 최초로 통일된 신도증을 조직적인 신도관리의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신도교육의 중요한 방편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홍보포스터에는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여 불자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기도 하였으나, 관람포 사찰의 무료입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홍보한 까닭에 일종의 '무료입장권'으로 신도가 아닌 일반인에게 발급되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의 불교계 기관들(불교방송, 풍류대 등 종합기관)은 입사지원 서류로 수계증 또는 신도증을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비불자들이 단순히 불교계에 취직하기 위해 사찰이나 단체에서 정식절차 없이 신도증이나 수계증 등을 임의로 발급받아 인사서류로 제출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들이 과연 불교를 제대로 알고, 불교 일을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거짓으로 불교에 발을 들여 놓는다면 그 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초심' 또는 '초발심'이라고 하여 '첫 마음'을 소중히 하는 것이 불교

의 전통이다.

실제로 불교 일을 하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불교적 소양이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는 교리의 이해와 경험뿐만이 아닌 여러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초심을 갖추는 3개의 5계 수지를 통한 신도의 입교과정만이라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조계종은 체계적인 신도교육을 위해 '기본-전문-심화' 과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입교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부족하다. 실제로 조계종이 통일하여 보급하는 '3개의 5계 수계의식문'과 '수계증' 및 '입교안내서'조차 없는 형편이다.

조계종 신도법 11조(기본교육) 3항에서는 각 신도단체의 임원, 각급 중무기관 및 종단산하 기관·단체의 종사자는 취임 후 1년 이내에 기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위의 법은 신도로서 입교과정을 마치면 누구나 종단의 소임을 볼 수 있음을 뜻



### 무료입장권·취업용 인식 곤란 입교과정·관리 체계확립 시급

하고 있다.

일각에서 이루어지는 신도증, 수계증의 남발은 양식의 부족도 문제이나 근본적으로 '입교' 과정과 내용의 부실도 적지 않은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찰별로 자율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불교의 입교과정이 신도증, 수계증의 남발을 방지하는 큰 요인이 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종단적으로 통일된 입교에 대한 교육내용과 과정을 정립하고, 관리 지원하는 제도의 마련과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

■ 주경(조계종포교원사업단 사무국장)

로써 입교과정을 마치면 누구나 종단의 소임을 볼 수 있음을 뜻

### 조계종 총 사찰의 64% 사설사암·등록 및 관리법 개정 의미

조계종 사찰의 64%를 차지하는 사설사암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사설사암 실태과와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은환)는 8월 23일 중앙총회 회의실에서 제7차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설사암등록 및 관리법 개정(안)을 검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설사암 장건주가 본 종단의 승려일 경우 주지로서 사찰을 관리할 권한을 갖으며, 주지로 취임하지 않을 경우 장건주는 주지추천권을 갖는다. 사설사암의 장건주가 승려가 아닐 경우에는 본 종단에 대한 주지추천권을 갖는다"고 명시, 장건주의 권리를 보장했다.

또 "장건주가 2인 이상일 경우 등록시 장건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과 그 행사기간을 명시해야 한다"며 2인 이상 공동출연한 사설사암 소유권 분쟁 소지를 줄였다.

그러나 "장건주의 권리를 종령에서 정하는 종단에 대한 명

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만 승계되고, 상속되지 아니한다. 장건주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고 사찰의 장건주가 사망한 사찰은 공할로 귀속해 관리토록 한다"고 규정, 사설사암에 대한 사찰 공개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장건주의 권리는 임의

서 다루기로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사설사암 특위 전체회의와 중앙총회를 거쳐야 입법된다.

위원장 최은환은 "사설사암 사자상승 부분이나 장건주 권한, 사설사암 소유 등 개정안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돼 중

와 건물이 개인 명의로 등기돼 있는 경우, 미보고는 재산 현황 자체가 보고 되지 않은 경우다. 특히 종단 유관 각종 위원회 소임을 맡고 있는 일부 스님과 일부 원로의원 스님들도 미등록 사설사암을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사설사암들은 직할교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설사암 관리 안 되는 이유와 대책은?**

조계종 스님 및 신도가 사설사암을 설립할 경우 '사설사암등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종단에 사찰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종단에 대한 신뢰성 부재와 과거 사찰 운영권을 전횡했던 정서로 인해 등록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사설사암 관리시스템이 총무부와 재무부, 호법부로 나눠져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설사암을 관리하는 인력이 총무부 담당자 1명뿐인 것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특히 사설사암등록및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는 변화된 조건에 맞는 사찰등록 및 관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설사암 등록 및 관리 기본법령 정비와 함께 종단등록 사찰관리 기본법령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남동우 기자

### 창건주 권리보장·공개념 분명히

#### 절반이 미등기·미보고...매매·무상양도등 불가능하게

로 양도할 수 없고 그 양도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해 사설사암 매매 뿐만 아니라 무상양도 또한 불가능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는 제5장 징계 조항이 있어 법적 구속력을 강화시켰다.

한편 회의에서 사설사암 교구 선정 문제와 법 시행 후 기존 사설사암 재등록 문제에 대해서는 쟁점 사안으로 남겨 전체회의에

양중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설사암 무엇이 문제인가?**

조계종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설사암 수는 총 1519곳(2003년 11월), 이 중 완전등기 309곳, 부분등기 572곳을 제외하면 사설사암 절반 정도가 완전미등기 또는 미보고 상태다.

완전미등기는 사찰 소유 토지

구 사설사암 분담금 납부현황을 샘플 조사한 결과 2003년 분담금 배정을 기준으로 배정률 24%, 납부율 65%로 분담금 배정비율이 낮고 납부율은 공할 92.8%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향후 사설사암 예산규모에 따라 분담금 배정율을 높이고,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법적 강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남동우 기자

### 고교종교교육 편향 '심각'

#### 기독교계 절반이상 선택 지침어거

#### 교육청 자료서 드러나

서울지역 고교 10곳 가운데 2곳이 기독교계 학교이고 이들 대다수는 종교과목 복수 편성 지침을 어기고 있었다. 특히 정규 교과시간의 종교활동을 강요하는 등 학생 개인의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최순영 의원(민주당)이 최근 서울시 교육청에 요구한 '2004학년도 고교 종교과목 및 종교활동 현황'을 통해 드러났다. 서울시 교육청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내 전체 고교 289개교 가운데 59개 학교

가 기독교 재단이며, 불교와 천주교가 각 3곳이었다.

종교편향적 운영으로 문제가 된 기독교 재단 59개 학교 가운데 종교과목을 교과과정에 편성하고 있는 학교는 52개 학교였으며, 교육학, 철학, 논리학, 종교 가운데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한 교육청 지침을 어기고 종교(기독교) 한 과목만을 가르치고 있는 곳도 25개 학교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13개 학교는 학생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학급별 예배, 신앙수련회, 정규시간의 예배 등 각종 종교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조용수 기자



법장 스님이 정동채 장관에게 문화재 보수 권한을 기능공에게도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박재환 기자

### "문화재보수 권한 기능공에게도..."

#### 법장스님 지적, 정동채장관 "검토"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8월 24일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문화관광부의 시찰을 통해 등록된 기능공에게도 문화재 보수 권한을 줘야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장 스님은 이에 대해 "기술자는 문화재 보수 이론에 능한 사람일 뿐 기술이 부족해 실질적 보수는 기능공이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동채 장관은 "관련 법령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법장 스님은 23일 이보경 신인 문화관광부 총무실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종무실을 종무청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게 평소 소신"이라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남동우 기자

### 종법개정 '의견일치'

#### 조계종호법분과위원회

조계종 중앙총회 호법분과위원회(위원장 법안, 이하 호법분과위)가 중앙총회의 원 징계를 위해 중앙총회의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종헌개정 무기명비밀투표원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뜻을 같이했다.

호법분과위는 8월 19~20일까지 서울 올림픽아호텔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호법분과위 소관 종법 개정 방향과 내용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위원들은 "종단의 사법기관은 호법원만 존재하기 때문에 종헌 제38조 제2항 '중앙총회위원의 징계는 중앙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종헌에 위배될 뿐 아니라, 총회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징계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며 중앙총회법 제18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인쇄인: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합헌'

#### 헌법재판소 결정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지난 7월 15일 대법원의 위헌판결이 난데 이어 헌법재판소 역시 헌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불교계 오대양(정도회 활동가·29) 씨를 비롯해 종교

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300여명에 대한 판결도 이번 헌재의 결정에 근거로 모두 유죄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판결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내 사법부의 판단은 사실상 종결됐다.

조용수 기자

남동우 기자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한국불교통신대학.대학원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통신교육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교재비만 각자가 부담합니다.

구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시	수시
수업연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윤.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년 2회 학습 수업)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년 2회 학습 수업)
전현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3매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특전: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한국 불교 통신대학. 대학원**  
 대학장 활안(한정섭)·대학원장 호암(김정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02)969-2410, 4981 / 팩스 02)964-2433

출가 수행을 의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계교육) 참조

---

## 나란다 삼장불학원 학인모집

사미과·사집과·사교과·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학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2004년 8월 31일 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교 수 진: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김진걸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한국 불교 금강선원**  
**나란다 삼장 불학원**  
 전화 02)969-2410 / 969-4981

통신교육을 의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